
2025년 행정사 2차 시험대비

파이널 특강

행정사실무법

- 소나리 교수 -

행정심판법 사례형 문제 최종정리

[문제1] 甲은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5%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관 乙에게 적발되었다.

乙은 운전면허취소권자인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甲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한편 乙과 함께 근무하는 순경의 전산입력 착오로 甲은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할 경찰서장은 2014. 07. 20.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고, 甲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다. 이후 乙의 의뢰를 받은 관할 지방 경찰청장은 2014. 08. 27. 甲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甲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자신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신뢰하였으며,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취소심판의 대상적격과 청구인적격은 적법한지 논하시오.

I. 문제제기

행정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피청구인 적격, 기간 내 청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해당 사안에서 대상적격과 청구인적격이 적법한지 검토한다.

II. 취소심판

1. 취소심판의 의의

2. 취소심판 청구요건

(1) 대상적격

1) 의의

2) 처분

3) 거부처분

(2) 청구인 적격

1) 의의

2)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

III. 사안의 해결

1)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이다. 즉 취소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2) 甲은 처분의 근거법인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이다.

IV. 결론

甲이 제기한 취소심판의 대상적격과 청구인적격은 적법하다.

[문제 2] 관할 행정청 A는 甲의 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였고, 이에 甲은 폐기물처리시설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때 환경영향평가구역 내에 있는 인근 주민 乙은 甲에 대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처분에 대해 허가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하였다.

이때 무효확인심판의 적법여부를 논하시오.

I. 문제제기

행정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피청구인 적격, 기간 내 청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해당 무효확인심판에서 대상적격 및 청구인적격이 적법한지 문제된다.

II. 무효확인심판

1. 대상적격

(1) 의의

(2) 처분

2. 청구인적격

(1) 의의

(2)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3) 인근 주민의 청구인적격

1) 의의

2) 인근 주민의 청구인 적격

III. 사안의 해결

1) 폐기물처리업허가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이다. 즉 무효확인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2) 乙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폐기물처리업 허가지역의 인근주민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겪는 자이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 주민들에 대해서는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즉, 청구인 적격을 가지고 있다.

IV. 결론

甲이 제기한 무효확인심판의 대상적격과 청구인적격은 적법하다.

[문제 3] A시는 영농상 편의를 위해 甲의 토지와 인근 토지에 걸쳐서 이미 형성되어 사용되고 있던 자연 발생적 토사구거를 철거하고, 콘크리트 U형 수로관으로 된 구거를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甲은 A시의 공사가 자신의 토지 약 75㎡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甲은 A시에 자신의 토지 약 75㎡에 설치되어 있는 구거를 철거하고 자신의 토지 외의 지역에 새로 구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甲이 민원제기와는 별도로 A시에 대하여 해당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구거의 철거와 새로운 구거의 설치를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였다면,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대상적격과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논하시오.

▶ 2018년 행정사 6회 사례

I. 문제제기

행정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피청구인 적격, 기간 내 청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해당 사안에서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적법한지 검토한다.

II. 의무이행심판

1. 의의

2. 의무이행심판 청구요건

(1) 대상적격

- 1) 의의
- 2) 거부처분
- 3) 부작위

(2) 청구인 적격

- 1) 의의
- 2)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

III. 사안의 해결

- 1) 현재 사안에서는 민원 제기 후 A시의 거부행위가 없어 검토할 수 없다.
- 2) 사안에서 A시는 甲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으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적격인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3) 甲은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 그 결과 의무 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IV. 결론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은 부적법하지만 청구인적격은 인정된다.

[문제 4] A시는 2014. 05. 30. 구(舊) 도심지의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공모하였다. 이 공모에는 甲, 乙, 丙 3개 업체가 지원하였다. 공모심사 결과 乙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甲과 丙은 탈락하였다. 甲은 2015. 05. 04. 乙이 해당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부족하고 사업자 선정과정도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시장에게 ①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② 심사위원 인적 사항, ③ 乙업체의 재정상태와 사업실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A시장은 2015. 05. 18. 위 청구 중 ③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①과 ②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이라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같은 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 甲은 A시장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06. 15.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이에 甲은 2015. 08. 31. A시장을 상대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甲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자격이 있는지 관하여 논하시오.

I. 문제제기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청구이익, 피청구인적격, 기간 내 청구 등이 요구되는데, 사안의 경우 청구인적격이 문제된다.

II.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 (1) 의의
- (2)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 (3) 법률상 이익

III. 경원자 관계

- (1) 의의
- (2) 청구인적격 인정 여부

IV. 사안의 해결

甲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이 있다.

V. 결론

- (1) 甲의 행정심판 청구요건은 적법하다.
- (2) A시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문제 5] 행정사 甲은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지 못한다.”라는 행정사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인 A시장으로부터 1개월 업무정지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그에 따라 甲은 1개월간 업무를 하지 못한 채, 그 업무정지기간은 만료되었다. 甲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위원회에 A시장의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표] 업무정지처분 기준에서는 제재처분의 횟수에 따라 제재가 가중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이미 처분이 집행되어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이후인데 심판 청구의 이익이 적법한가?

I. 문제제기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청구이익, 피청구인적격, 기간 내 청구 등이 요구되는데, 사안의 경우 심판 청구의 이익이 문제된다.

II. 협의의 청구이익

1. 청구인적격

2.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3. 청구이익

(1) 의의

(2) 처분의 집행으로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1) 원칙

2) 예외

III. 사안의 적용

원칙적으로 행정사 甲에 대한 처분의 효력은 이미 업무정지기간 만료로 인하여 청구이익이 없어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이 가중적제재의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협의의 청구 이익이 인정된다.

VI. 결론

甲이 제기한 심판 청구 이익이 인정된다.

[문제 6] 서울특별시 A구에 거주하는 甲은, 乙의 건축물(음식점 영업과 주거를 함께하는 건물)이 甲 소유의 주택과 도보에 연접하고 있는데 乙이 건축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증개축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甲의 집 앞 도로의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A구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甲은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과 乙이 행한 건축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A구청장 을 상대로 乙소유 건축물의 설계도면과 준공 검사 내역 등의 문서를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A구청장은 해당정보가 乙의 사생활 및 영업상 비밀보호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비공개결정 하였다. 乙 또한 정보공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甲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甲이 청구하는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적격이 적법한지 검토하고 해당 심판은 어느 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가?

I. 문제제기

甲의 제기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적격을 검토하고 해당 심판은 어느 심판위원회가 관할을 갖는지 검토한다.

II. 관할

1. 피청구인 적격

2. 심판기관의 의의

3. 행정심판기관의 설치(종류)

III. 사안의 해결

A구청장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므로 피청구인 적격이 있다.

또한 해당 심판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이 된다.

IV. 결론

(1) 甲이 A구청장을 상대로 행한 피청구인 적격이 적법하다.

(2) 甲이 청구한 행정심판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 위원회의 관할에 속한다.

[문제 7] 서울특별시 A구에 거주하는 甲은, 乙의 건축물(음식점 영업과 주거를 함께하는 건물)이 甲 소유의 주택과 도로에 연접하고 있는데 乙이 건축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증개축 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甲의 집 앞 도로의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A구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甲은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과 乙이 행한 건축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A구청장을 상대로 乙소유 건축물의 설계도면과 준공검사내역 등의 문서를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A구청장은 해당정보가 乙의 사생활 및 영업상 비밀보호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비공개결정 하였다. 乙 또한 정보공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甲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시오.

이 행정심판에서 乙은 어떠한 지위에서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가?

I. 문제제기

사안에서 乙이 행정심판의 제3자이지만 심판참가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II. 제3자의 심판참가

1. 의의 및 취지
2. 신청에 의한 참가
3. 참가인의 지위

III. 사안의 적용

乙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의해 직접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이므로 신청 등으로 심판참가가 가능하다.

IV. 결론

乙은 참가인의 지위로서 행정심판 절차에 참가가 가능하다.

[문제 8] 甲은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고, 그 영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甲은 2020. 03. 05. 23:30경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에 적발되었다. A시장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20. 04. 08. 甲에 대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의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甲은 다음 날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통지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20일 이내에 B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청구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甲은 해당 처분이 자신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제재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A시장은 피청구인으로 하여 B행정심판위원회에 2020. 08. 03.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다.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논하시오.

I. 문제제기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청구이익, 피청구인적격, 기간 내 청구 등이 요구되는데, 사안의 경우 심판 청구의 기간을 준수했는지 문제된다.

II.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 원칙

- (1) 90일 이내
- (2) 180일 이내

2. 고지의무

- (1) 오고지
- (2) 불고지

III. 사안의 적용

- 1) 甲은 원칙적으로 2020. 04. 09. 영업정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취소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 2) 행정청인 A시장이 청구기간을 오고지 하였으므로 처분이 있었던 2020. 04. 09.을 기준으로 안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IV. 결론

甲 제기된 취소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문제 9] 행정사 甲은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지 못한다.”라는 행정사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인 A시장으로부터 1개월 업무정지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처분서를 2017. 05. 01. 송달 받았다. 그에 따라 甲은 1개월간 업무를 하지 못한 채, 그 업무정지기간은 만료되었다. 甲은 A시장으로부터 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고지를 받지 못했다. 甲은 2017. 09. 08.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A시장의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표] 업무정지처분 기준에서는 제재처분의 횟수에 따라 제재가 가중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A시장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처분 시 제시하지 않았던 ‘甲이 2개의 행정사 사무소를 설치·운영하였음’이라는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가?

I. 문제제기

행정심판 계속 중 A시장이 처분 시 제시하지 않았던 처분사유를 추가·변경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II.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1. 의의 및 취지
2.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인정요건

III. 사안의 적용

- (1) 보수규정 위반사실과 2개 사무소의 설치규정 위반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 (2) 2개 사무소의 설치규정 위반사실은 처분 시 존재하였던 사유가 아니다.

IV. 결론

A시장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처분 시 제시하지 않았던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문제 10] A시의 공공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대상 공공아파트 1개동을 건설하기 위하여 甲은 시장 乙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이 신청에 대하여 乙은 관계법령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구술로 답을 하였다. 그러나 乙의 임기만료 후에 새로 취임한 시장 丙은 공공아파트 신축 예정 지역 인근에 시지정 공원이 있어 아파트 건설로 A시의 환경,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이하 “이 사건 취소심판”)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 사건 취소심판에서 집행정지의 인용 여부를 검토하시오.

I. 문제제기

행정심판법은 심판계속 중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써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소심판에서 집행정지가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II. 집행정지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효력

III. 임시처분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임시처분의 보충성

IV. 사안의 적용

- (1)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반려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신청 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므로,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되지 못한다. 즉, 반려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 (2) 다만,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V. 결론

결국, 이 사건 취소심판의 경우 집행정지는 인용될 수 없다.

[문제 11] 甲은 A행정청이 시행한 국가공무원시험의 1차 객관식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이하 “처분”이라 함)하였다. 이 시험은 1차 객관식시험, 2차 주관식시험과 3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고, 3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최종 합격자가 된다. 또한 3차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차 주관식시험에, 2차 주관식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차 객관식시험에 각각 합격하여야 한다. 甲은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2차 주관식시험 시행 전까지 재결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자 한다. 甲이 재결 전이라도 2차 주관식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논하시오

▶ 2016년 행정사 4회 사례

I. 문제제기

사안의 경우 재결 전이라도 甲이 가구제 수단으로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II. 집행정지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효력

III. 임시처분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임시처분의 보충성

IV. 사안의 적용

- (1) 甲이 불합격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더라도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정지는 실효적 구제수단이 되지 못한다.
- (2) 甲의 불합격처분이 위법·부당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이 인정될 수는 있다.
- (3) 甲이 재결 전이라도 2차 주관식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은 임시처분이다.

V. 결론

甲이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으로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2] 甲은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고, 그 영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甲은 2020. 03. 05. 23:30경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에 적발되었다. A시장은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20. 04. 08. 甲에 대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의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甲은 다음 날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통지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20일 이내에 B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청구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甲은 해당 처분이 자신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제재처분 이라고 주장하면서 A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B행정심판위원회에 2020. 08. 03.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다.

B행정심판위원회가 A시장의 영업정지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떤 종류의 재결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I. 문제제기

재결의 종류에 대하여 확인한 후 어떤 종류의 재결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II. 재결의 종류

1. 각하재결
2. 기각재결
3. 인용재결

III. 사안의 적용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취소심판이고, B행정 심판위원회는 3개월 영업정지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변경재결을 하거나 또는 피청구인에게 변경명령재결을 명할 수 있다.

IV. 결론

따라서 B행정심판위원회는 변경재결을 하거나 또는 피청구인 A시장에게 변경명령재결을 명할 수 있다.

[문제 1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A는 개발 구역 내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토지평가협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가격을 평가하였고, 관할 행정청은 이에 근거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내렸다. 처분을 받은 甲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처분의 기초가 된 가격평가의 내용은 적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받은 이해관계인들 중 甲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에 불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만약 이 처분이 취소될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까지도 변경되어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해짐으로써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甲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I. 문제제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취소심판에 이유가 있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는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인 사정재결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II. 사정재결

1. 의의
2. 사정재결의 적용범위
3. 사정재결의 요건
4. 구제조치

III. 사안의 적용

- 1) 본 사안은 취소심판이므로 사정재결이 적용 된다.
- 2)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지정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甲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3) 따라서 사정재결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정 재결을 할 수 있다.

IV. 결 론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문제 14] 甲은 ‘사실상의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관할 구청장 乙에게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乙은 ‘위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위 거부행위에 대해 취소심판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자 乙은 ‘이 사건 토지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甲이 신청한 주택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위 재결에도 불구하고 乙이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적법한가?

I. 문제제기

취소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재결 이후 관할 구청장 乙이 다른 사유로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이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한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II. 기속력

1. 기속력 의의
2. 내용
3. 범위
4. 위반한 처분의 효력

III. 사안의 적용

- (1)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사실상 도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므로 관할 구청장 乙은 위 범위 내에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 (2) 사안의 경우 반복금지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데, 동일한 사유로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한 경우이므로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

IV. 결론

취소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재결 이후 관할 구청장 乙이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적법하다.

[문제 15] A시의 공공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대상 공공아파트 1개동을 건설하기 위하여 甲은 시장 乙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이 신청에 대하여 乙은 관계법령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구술로 답을 하였다. 그러나 乙의 임기만료 후에 새로 취임한 시장 丙은 공공아파트 신축 예정 지역 인근에 시 지정 공원이 있어 아파트 건설로 A시의 환경,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이하 “이 사건 취소심판”)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丙은 이 사건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반려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때 甲이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I. 문제제기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재결 이후 재결의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심판법상 甲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써 직접처분과 간접강제가 문제된다.

II. 직접처분

1. 의의
2. 한계

III. 간접강제

1. 의의
2. 요건
3. 방식

IV. 사안의 해결

-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직접처분은 처분의 성질(재량행위)상 위원회가 직접처분 할 수 없다.
- (2) 다만, 인용재결이 있고, 甲의 신청이 있으며, 위원회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丙 시장이 기간 내 불이행하고,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한다면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V. 결론

甲이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실효적인 구제수단은 간접강제이다.